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326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항공분야 : 조종사 · 정비사 · 운항·관제사) 시행계획 공고

2020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항공분야 : 조종사 · 정비사 · 운항·관제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Ⅰ. 시험개요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34조(시험실시권)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2. 채용예정인원 : 총 5명(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운항 · 관제사 3명)

채용분야(항공)	채용계급	채용인원	비 고
조 종 사	소방위	1명	남
정 비 사	소방장	1명	남
운항·관제사	소방교	3명	양성

3. 채용일정

시험구분		시험기간	시험장소	합격발표
응시원서접수		2020. 2. 17.(10:00) ~ 2. 19.(18:00) (3일간/접수기간) 2020. 2. 17. ~ 2. 22.(18:00) (취소기간)	• 원서접수 : 인터넷(http://www.119gosi.kr) • 신체검사 등 서류제출 : 등기우편 또는 인편 (04.08. 18:00까지 제출) 우편은 04.08.소인까지 인정 ※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갈음 ※ 채용기관으로 제출(붙임7 참조)	
실기시험	조 종 사	2020. 3. 11. ~ 3. 13.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2020. 2. 26.)	
	정 비 사	2020. 3. 17.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2020. 2. 26.)	
	운항·관제사	2020. 3. 18. ~ 3. 19.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2020. 2. 26.)	

신체검사		2020. 3. 24. ~ 3. 26.	• 신체검사 세부사항 별도공고(2020. 3. 23.) • 신체검사 합격자공고(2020. 4. 13.)
인·적성검사		2020. 3. 27.	• 검사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2020. 3. 23.)
면접시험	조종사	2020. 4. 16.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2020. 4. 13.)
	정비사	2020. 4. 17.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2020. 4. 13.)
	운항·관제사	2020. 4. 20. ~ 4. 21..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2020. 4. 13.)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4. 29.	

4. 실기시험방법 및 평가내용

시험구분	평가방법	평가내용
조 종 사	시뮬레이터평가	기본비행, 소방임무형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정 비 사	구술평가	정비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업무역량
운항·관제사	구술평가	운항·관제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업무역량

5.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병역법」 제7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분 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조 종 사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소지자
정 비 사	「항공안전법」 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근무 7년 이상인 자
운항·관제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근무 2년 이상 경력자

다. 응시연령

구 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연 령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방위	조종사	23세이상 45세이하('74.1.1.~'97.12.31.)
	소방장	정비사	23세이상 40세이하('79.1.1.~'97.12.31.)
	소방교	운항·관제사	20세이상 40세이하('79.1.1.~'00.12.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1 참고),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 1-1참고)

마. 거주지 : 제한 없음

Ⅱ. 원서접수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0. 2. 17.(월), 10:00 ~ 2. 19.(수), 18:00 / 3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취소기간 : 2. 17. ~ 2. 22. 18:00/6일간)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www.119gosi.kr) 사이트 접속접수

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소방위 7,000, 소방장 7,000원, 소방교 5,000원(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 시 납부 응시료 환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점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www.119gosi.kr)사이트에 접속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점 표기 ※ 자격증 가점은 없음

구 분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	5%, 10%	3%, 5%

○ 원서접수 이후 실기시험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실기시험 전일까지 채용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Ⅲ. 실기시험

1. 조종사 실기시험

가. 시험일시 : 2020. 3. 12.(목) ~ 3. 13.(금) *3월 11일 사전비행

※ 당일 08:30까지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평가항목 :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라.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조종사자격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실기시험은 각 항목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이상 득점자(각 평가항목별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결정하며,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비사 실기시험

가. 시험일시 : 2020. 3. 17.(화)

※ 당일 08:30까지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평가항목 : 정비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임무역량

라.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정비사자격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실기시험은 각 항목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이상 득점자(각 평가항목별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결정하며,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운항 · 관제사 실기시험

가. 시험일시 : 2020. 3. 18.(수) ~ 3. 19.(목)

※ 당일 08:30까지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평가항목 : 운항・관제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임무역량

라.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실기시험은 각 항목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이상 득점자(각 평가항목별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20. 3. 23.(월), 14:00

나. 공고방법 : https://www.incheon.go.kr/119 게시

다. 공고내용 : 실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및 인·적성검사 일정 등

Ⅳ. 서류전형

1. 서류제출

가. 제출일자 : 2020. 4. 8.(수)까지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제출

나. 제출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다.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조 종 사	①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중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비행경력증명서 1부(최종비행일 명시) ※ 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④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원본 1부 ⑤ 계기비행자격증명서 원본 1부 ⑥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원본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⑨「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
정 비 사	①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 원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운항·관제사	①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원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라.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www.d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재직시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④ 응시자 유의사항 :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미 응시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Ⅴ. 신체검사

1. 서류제출

가. 검사기간 : 2020. 3. 24.(화) ~ 3. 26.(목)

가. 제출기한 : 2020. 4. 8.(수)까지 채용기관에 제출

나.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붙임6 참조)

※ 중앙소방학교에서 지정하지 않은 종합병원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다. 검사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에 따라 검사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증명사진(3.5×4.5, 2매), 수수료 (수수료는 응시생이 부담합니다)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접일 5일전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주의사항>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공무원 신체검사서 불인정)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2.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가. 공고일자 : 2020. 4. 13.(월) 최종합격자 발표 시 결과 반영(불합격자 개별통보)

나. 공고방법 : https://www.incheon.go.kr/119

<신체검사 합격기준>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적합한 사람 모두 합격(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별표5)

☞ 불합격 판정기준「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

Ⅶ. 면접시험

1. 인·적성검사

가. 검사일시 : 2020. 3. 27.(금)

나. 장　　소 : 별도공고

다. 검사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2. 면접시험

가. 시험일시 : 조종사[2020. 4. 16.(목)], 정비사[2020. 4. 17.(금)]
운항・관제사[2020. 4. 20.(월) ~ 4. 21.(화)]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시험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블라인드 면접), 2단계 개별면접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면접시험 합격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0,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Ⅶ.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20. 4. 29.(수)

나. 공고방법 : https://www.incheon.go.kr/119

<최종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Ⅷ. 응시자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https://www.incheon.go.kr/119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https://www.incheon.go.kr/119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실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실기·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실시·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 등)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신청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육아휴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2.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원서접수 종료 이후 실기시험 최종예정일 전일 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채용기관으로 제출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접수 시 반드시 가산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의 응시분야, 지역은 원서접수 종료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 응시자격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체검사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공무원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의 압인 도는 계인 처리 되어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수검하고 채용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5. 기타사항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실기, 면접 등)**
- 문의처 : 소방청 항공통신과
- 연락처 : 044-205-7703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32

◆ **제출서류 문의 :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4)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1-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1부.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6.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7. 서류제출 채용기관 주소 및 연락처 1부. 끝.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 1-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0,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붙임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

○ 기준일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채용기관으로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대상 :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시)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 기준일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채용기관으로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3% 또는 5%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호보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대상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9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산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산점 표기 없음)

○ 가산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

<붙임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붙임 6>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02053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07061	
3	국립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05715	
4	구포성심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구포동)	051-330-3996	46581	
5	대동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47737	
6	동래봉생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537	47889	
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49201	
8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47527	
9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49241	
10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051-933-7672	48575	
11	영도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57	49036	
12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6 (온천동)	051-590-3384	47821	
13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48265	
14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26	46555	
15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7	48094	
16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48775	
17	재단법인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좌천동)	051-630-0421	48724	
18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1	47352	
19	학교법인)동의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47227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46996	
21	해동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700	49035	
22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 2가)	053-200-5791	41944	
2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42601	
2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434	42472	
25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387	41845	
26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940-7025	41199	
27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0-3180	42415	
28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22532	
29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62284	
30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검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6~7	35015	
31	대청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서부 계백로 1322 (정림동)	042-589-6553~4	35403	
32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114	44455	
33	중앙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80번길 10 (신정동)	052-226-1100	44667	
34	아주대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 2번선택	16499	
35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16494	
36	의정부백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031-843-8383	11778	
37	강릉아산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25440	
38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313	24289	
39	삼척의료원	강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남양동)	033-570-7418	25920	
40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033-741-1670~2	26426	
41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043-279-0114, 2번선택	28547	
42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삼룡동)	041-570-7200	31071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비고
4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녕로 77 (웅진동)	041-962-1111	32535	
4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041-689-7000	32001	
4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32232	
46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54907	본관 지하1층 건강관리과
47	예수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063-230-1515	54987	본관 2층 건강의학센터
48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0	54910	제3병원(응급실) 7층
49	익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20	54543	신관2층 건강증진센터
50	동군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063-440-0370	54033	신관2층 건강증진센터
51	정읍아산병원	전북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140	56153	2층 건강진단센터
52	남원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52	55726	1층 건강증진센터
53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58701	
54	나주종합병원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061-330-6114	58251	
55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57931	
56	여천전남병원	전남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061-690-6000	59641	
57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000	36694	
58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114	39371	
59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75-0005	37816	
60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32-8901	39579	
61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055-733-0000	53290	
62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두모동)	055-680-8114	53317	
63	의료법인 성념의료재단맑은샘병원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055-731-1240	53209	
64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50971	
65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0	50960	
66	강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강일병원)	055-822-0100	50905	
67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50880	
68	베데스다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50576	
69	웅상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59 (명동)	1600-7582	50536	
7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50612	
71	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52709	
72	진주고려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진주고려병원)	055-751-2500	52726	
73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52818	지하1, 지상 1~5,7층
74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055-750-8000	52727	
75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2	51394	
76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2050	51472	
77	한마음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055-268-7898	51497	
78	삼성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6012	51353	
79	에스엠지연세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542	51740	
80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41	51264	
81	연세에스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055-548-7794	51659	
82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63127	
83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2	63109	
84	한마음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064-750-9000	63227	
8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580	63241	
86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000	63585	
87	한국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701	63183	

<붙임 7>

서류제출 채용기관 주소 및 연락처

연번	채용기관	주 소	전화번호	담 당 자
1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3층 소방행정과 (주안동, 인천소방본부)	032-870-3014	안광일